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6. 10.

경기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김기열 의원 등 5명(김기열, 배용식, 안영란, 원종진, 조복희)
- 발의일자: 2021. 5. 25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(2021. 6. 10.)

2. 개정이유
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과 취소 규정을 구분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그 사유를 명시(안 제9조)
- 법적 근거 오류 수정(안 제11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, 제13조의3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
- 입법예고(2021. 5. 25. ~ 2021. 6. 7.) 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김경숙)

-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, 취소를 규정한 조항으로
- 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·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
- 이 조문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과 취소를 함께 규정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,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
 - 제9조제2항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였고, 조례안 제11조제1항은 인용 법령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 제9조제2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사유에 제1호 규정인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가 취소된 경우는 당연 사유가 되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토론 요지: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본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의 신설은 타당함.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